

용인소방서, 강화된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

용인소방서(서장 조창래)가 6월 22일 처벌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무허가 위험물 제

조소 설치 처벌 기준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고, 위험물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강화된 처벌규정은 개정 전 처벌 기준이 위법행위의 공성위해성에 비춰 처벌수위가 현저히 낮아 예방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용인 최규복기자